

가정상담

2023 | 08
통권 480호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전국 어디에서나
가정법률 관련 **화상상담**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세요
www.lawhome.or.kr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본소 광배희 소장은 7월 6일 정부 과
천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사
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법률구조 강화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관련기
사 3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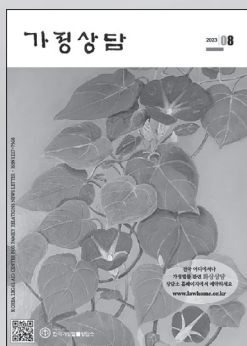


◀ 상담소에서는 하계 방학을 맞아 7월
14일부터 2주간 2023년도 법학전문
대학원생 실무수습이 진행되었고,

▼ 7월 18일에는 동국대학교 법학과 학
생들의 법률구조 현장 체험교육이 실
시되었다. (관련기사 34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받으면 부끄러워지고 거절하면 당당해집니다



- 4 • 이달의 메시지
- 6 • 특집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2년도 상담통계 - 가정폭력
- 20 • 특별기획 |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 ⑧
- 21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⑤②
- 22 • 가정폭력상담실
- 25 • 어떻게 할까요
- 27 • 좋은 책
일본산고
- 28 • 결혼과 인생(233) 영화 이야기
우리집 _ 김용언
- 30 • 실무수습 소감문
- 34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 36 • 소송구조



대한민국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이며 법률구조법 제정을 끌어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법에 의거한 예산지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길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인 1986년, 상담소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며 모처럼 큰 기념행사를 치렀습니다. 우리나라에 법률구조 사업을 최초로 시작하여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꾸준한 발걸음을 재촉한 결과 마침내 그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안착하여 우리나라 전역에 법률구조를 확대시킬 수 있는 더 큰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상담소는 이와 관련한 방대한 사업계획을 세웠고, 한 해 동안 실천해 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건의문과 결의문 채택이 있었는데 그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가정법원 전국 설치’ ‘법률구조법 제정’ 그리고 ‘가족법 개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법률구조법 제정’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956년 상담소가 문을 열 무렵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물론 가정법원조차 세워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상담소는 여성법률상담소로 문을 열어 가정법률 전문상담으로 특화하면서 이미 1960년대부터 가족법개정운동을 주도하기 시작하였고, 가정법원 설치를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한 가사심판법 제정의 입법 초안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상담소는 1960년대 그 명칭을 가정법률상담소로 바꾸고 가족구성원 모두의 권익을 위한 인권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법무부의 인가를 받아 사단법인이 되었으며 1970년에는 국제법률부조협회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 지금은 법률구조라고 쓰지만 당시에는 법률부조라 했습니다. 그리고 창립 30주년을 맞아 해 ‘가난하고 법을 몰라 자기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위해 법률부조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민주 법치 국가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며, 법의 보호로부터 외면당하는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도 하루속히 법률구조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법률구조법의 제정을 촉구'하였으며 이것이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구조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담소의 시작부터가 우리나라 최초 여성 변호사의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창립 70주년을 앞둔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담소 모든 사업과 활동은 희생과 봉사, 헌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국가의 도움 없이 민간단체의 헌신과 봉사만으로 안정되고 일관된 사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분명했기에 상담소는 법률구조법 시행 이후인 1988년 법률구조법에 의거해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법률구조법인으로 등록하고, 1989년부터 동법을 근거로 국가로부터 최소의 사업비를 지원받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률구조법에서 법의 목적을 언급한 제1조는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며, 제3조(등록)와 제4조(보조금의 지급)에 의거 상담소는 법무부 산하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고, 이미 30년 이상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주무부서에 사업보고를 하며 법무부로부터 업무감사 또한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상담소의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결국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하고 노력하면서 무엇보다 법률구조 사업에 충실하게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와 가정, 가족구성원의 복리를 기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주어진 예산안에서 최대한 창의력을 발휘하고 헌신을 다해 우리 사회 소외계층, 빈민하는 이웃들을 위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가정법률상담소는 언제나 이러한 자세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기관다운 면모를 유지하면서 예산 협의 과정

에서도 최대한 협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 왔습니다.

법률구조기관으로써 그리고 가정문제 전문 상담기관으로써 상담소가 우리 사회에 남긴 자취는 상담통계와 소송구조 현황, 가족법개정운동의 성과, 각 대학 법학과,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의 상담소에서의 실습 그리고 상담소가 진행하고 있고 또 한발 앞서 시도해온 무수한 교육 프로그램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으며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게 분명한데 유독 예산편성 때가 되면 상담소의 존재, 역사, 현황을 처음부터 매번 다시 증명해야 하는 곤혹한 상황을 마주해야 합니다.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받는 예산이기에 당연한 절차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협의하고 또 수궁해 나아가며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상담소의 존재와 당위를 처음부터 다시 증명하라는 요구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실제 국민 다수가 그 사업 내용을 체감하기 어려운 곳에 몇 십억 씩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억 예산이 편성된다는 언론 보도를 보면 허탈해지는 심경입니다.

더 이상 보수할 수도 없이 낡은 여성백인회관 대신 새로운 상담소 회관을 짓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때가 새삼스럽게 생각납니다. 법률구조사업을 하는데 굳이 좋은 환경이 필요한가 하는 일각의 시선을 앞에 두고 상담소를 찾는 내담자들에게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워낙 열악한 환경이어서 내담자들이 위로하고 돌아갈 정도였던 상담소의 직원들도 이제는 내담자들의 걱정과 위로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설득하기가 그리도 어려웠습니다. 해마다 이러한 벽을 다시 마주하는 느낌입니다.

저는 법에 의거 예산을 지원받고 그에 따른 업무보고와 감사를 당연하게 받으며 우리나라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구조사업이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국가의 예산 지원이 조금은 더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해마다 간절해집니다.

특집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2년도 상담통계 - 가정폭력

행위자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가정폭력을 심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해

I. 들어가는 말

본 상담소는 2022년 한 해 동안 서울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등으로부터 가정폭력처벌법상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행위자 총 496명을 수탁받아 상담을 진행하였다.¹⁾ 2021년에 위탁받아 2022년까지 상담을 진행한 행위자 210명을 포함하면 2022년에 상담을 진행한 행위자는 모두 706명이었으며, 이 중 400명은 2022년에 상담을 종료하였다. 이하에서는 2022년에 상담이 종료된 400명에 대한 항목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II. 항목별 분석 내용

1) 사건 관련

① 수탁 법원

2022에 상담이 종결된 400명을 수탁한 법원을 살펴보면, 서울가정법원이 99.2% (397명)로 가장 많았다.

법원명 \ 구 분	수(명)	백분율(%)
서울가정법원	397	99.2
수원가정법원	2	0.5
미국법원	1	0.3
합 계	400	100

2)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0~50대 남성 행위자가 54.2%로 다수 차지

부부폭력, 남성 행위자가 절대적으로 많아
코로나19 회복세와 함께 행위자와 피해자의

무직 비율 소폭 감소
다문화가정에서의 폭력 증가

부부의 경우

동거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가 27.8%로

가장 많아
육아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폭력 발생 많아

1) 구체적으로는 서울가정법원 492명, 수원가정법원 4명을 포함하여 총 496명을 2022년에 수탁받았다. 이는 2020년 231건에 비해 2.2배, 2021년 413건에 비해 1.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① 남녀별

행위자 400명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288명(72%), 여성이 112명(28%)이었다. 여성 행위자 중 66명(58.9%)은 부부가 함께 위탁된 경우였다.

여성 행위자 112명 중 88명(78.6%)은 피해자와 부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에서 남편의 폭력이 여전히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아내들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대항하여 방어 또는 생존의 수단으로 폭력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성별	행위자		피해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남성	288	72.0	120	27.7
여성	112	28.0	280	72.3
합계	400	100	400	100

② 연령별

연령별로 보면 행위자의 경우 40대가 28.5%(114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대(25.7%), 30대(17.7%)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경우는 40대가 27.3%(109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22.7%), 50대(20%)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연령	행위자		피해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10대	2	0.5	3	0.7
20대	33	8.2	47	11.8
30대	71	17.7	91	22.7
40대	114	28.5	109	27.3
50대	103	25.7	80	20.0
60대	63	15.8	53	13.2
70대	13	3.3	13	3.3
80대 이상	1	0.3	4	1.0
합계	400	100	400	100

③ 교육수준별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행위자는 고등학교 졸업이 41.3%

(165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이 32.8%(131명)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이 39.2%(157명)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이 36.2%(145명)로 나타났다.

구분 교육정도	행위자		피해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초졸이하	21	5.2	31	7.8
중졸	33	8.2	28	7.0
고졸	165	41.3	145	36.2
전문대졸	27	6.8	22	5.5
대졸	131	32.8	157	39.2
대학원이상	23	5.7	17	4.3
합계	400	100	400	100

④ 직업별

행위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회사원이 24.7%(99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단순노무 16.2%(65명), 자영업 13.5%(54명) 순이었다. 무직의 경우 팬데믹 이전 2019년에는 그 비율이 6.2%(16명)이었었는데, 2020년 11%(21명), 2021년 14.7%(51명)로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으나, 2022년에는 11.6%(46명)로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경우에는 주부가 32%(128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회사원이 20.7%(83명)을 차지했다. 피해자의 경우에도 무직의 비율이 2021년 7.5%(26명)에서 5%(20명)로 소폭 감소했다.

구분 직업	행위자		피해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주부	49	12.2	128	32.0
회사원	99	24.7	83	20.7
단순노무	65	16.2	42	10.5
자영업	54	13.5	49	12.2
교육직	10	2.5	14	3.5
전문직	18	4.6	16	4.0
기술직	32	8.0	12	3.0
운전	14	3.5	6	1.5
학생	13	3.2	25	6.3
공무원	-	-	5	1.3
무직	46	11.6	20	5.0
합계	400	100	400	100

⑤ 경제상태별

월수입을 기준으로 경제상태를 살펴보면, 행위자의 경우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8.7%(115명)로 가장 많았다. 월수입이 없거나 그 액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24.8%(99명)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월수입이 없거나 그 액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45.2%(181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월 수 입	행 위 자		피 해 자	
	수 (명)	백분율 (%)	수 (명)	백분율 (%)
100만원 미만	9	2.3	9	2.3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38	9.5	31	7.7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97	24.2	99	24.8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15	28.7	54	13.5
500만원 이상	42	10.5	26	6.5
일정한 수입이 없음	99	24.8	181	45.2
합 계	400	100	400	100

⑥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행위자와 피해자가 부부관계인 경우(법률혼 부부 및 사실혼 부부 포함)가 321명으로 80.3%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성인자녀 관계인 경우가 12.7%(62명)로 나타났다. 부부 또는 부모-자녀 관계 이외에도 남매관계, 형제관계, 고부관계, 자매관계, 조손관계 등 다양한 가족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하였다.

구 분		수 (명)	백분율(%)
부부관계	법률혼 부부	277	69.3
	사실혼 부부	44	11.0
부모-자녀 관계	부모-성인자녀 관계	62	12.7
	부모-미성년자녀 관계	2	3.1
기타 가족관계	남매 관계	7	1.8
	형제 관계	4	1.0
	고부 관계	2	0.5
	자매 관계	1	0.3
	조손 관계	1	0.3
합 계		400	100

한편 행위자와 피해자가 부부관계인 경우(321명)에 부부 일방 또는 부부 모두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이 11.5%(37명)인 것으로 나타나, 2021년 9.5%(33명)과 비교하였을 때 그 비율이 1.2배 이상 증가하였다. 외국인 행위자는 총 24명으로 이들의 본국은 중국이 75%(18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미국이 16.6%(4명)로 나타났다. 외국인 피해자는 총 30명으로 이들의 본국 역시 중국이 56.7%(17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미국, 필리핀, 베트남이 각 10%(각 3명)로 나타났다.

구 분 본 국	행 위 자		피 해 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중국	18	75.0	17	56.7
미국	4	16.6	3	10.0
대만	1	4.2	1	3.3
우즈벡	1	4.2	-	-
필리핀	-	-	3	10.0
베트남	-	-	3	10.0
몽골	-	-	2	6.7
멕시코	-	-	1	3.3
합 계	24	100	30	100

⑦ 혼인형태별²⁾

행위자와 피해자의 혼인형태를 보면,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가 77.9%(250명)로 가장 많았다.

구 분	수(명)	백분율(%)
혼 인 형 태		
(남)초혼-(여)초혼	250	77.9
(남)재혼-(여)초혼	14	4.4
(남)초혼-(여)재혼	16	4.9
(남)재혼-(여)재혼	41	12.8
합 계	321	100

2) 혼인형태별 분석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법률혼 또는 사실혼 부부인 경우(321명)에 국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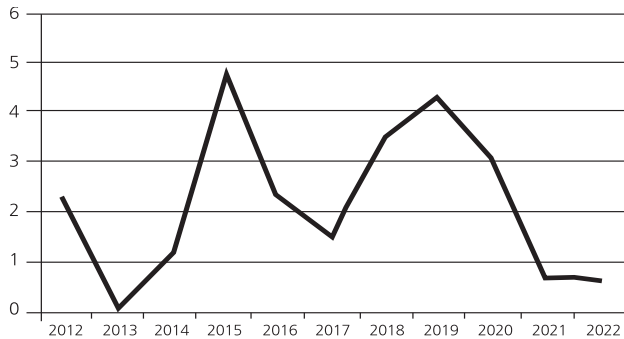
⑧ 동거기간별³⁾

1년 이상 5년 미만→10년 이상 20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순으로 폭력발생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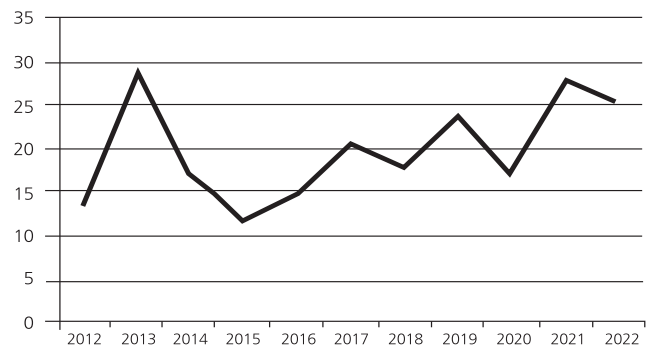
행위자와 피해자의 동거기간을 살펴보면, 동거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가 25.2%(81명)로 가장 많았고,

이는 2021년 27.8%(79명)와 비교하였을 때 다소 감소하였다. 다른 기간에 비해 두드러진 특징은 부부 81명 중 39명(48.2%⁴⁾)이 육아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았는데, 가사와 양육을 평등하게 책임지기를 원하는 아내와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유지하려는 남편 간의 입장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폭력이 발생하였다. 동거기간이 짧더라도 행위자는 폭력을 수단으로 통제와 제압을 함으로써 부부관계에서 권력을 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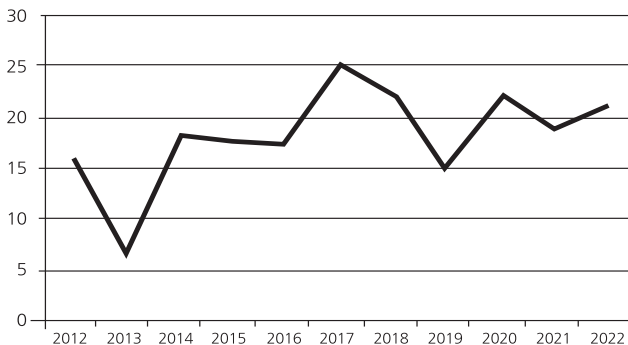
〈 1년 미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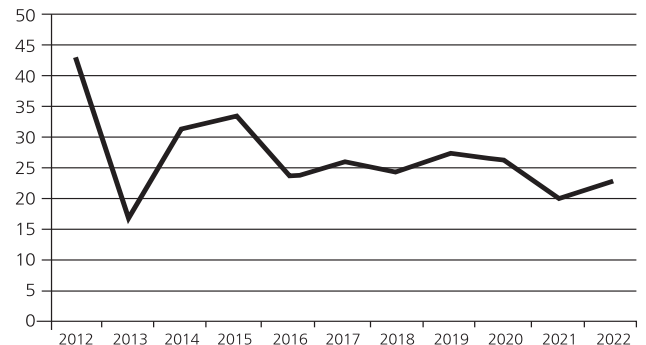
〈 1년 이상 - 5년 미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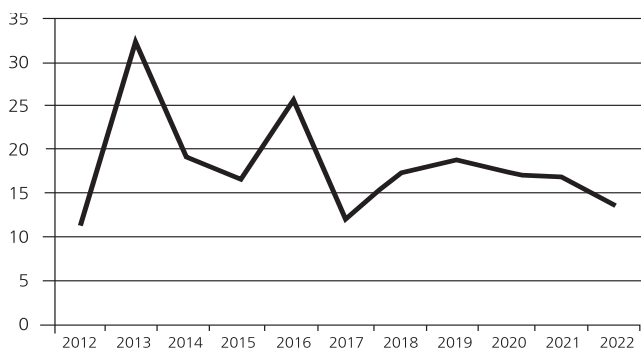
〈 5년 이상 - 10년 미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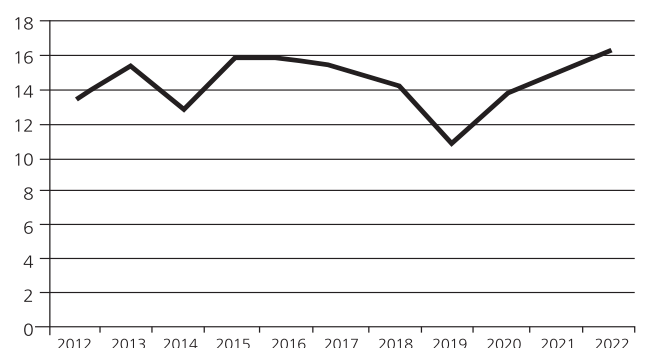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 20년 이상 - 30년 미만 〉



〈 30년 이상 〉



〈 그림 1. 2012년~2022년 최근 10년간 동거기간 추이 분석 〉

3) 동거기간별 분석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법률혼 또는 사실혼 부부인 경우(321명)에 국한하였다.

4) 폭력행사의 이유는 중복응답 가능한 항목이다.

득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자 하는 반면, 피해자는 폭력을 참거나 묵인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가정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동거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가 23.1%(74명)로 가장 많았고, 이는 2021년 20.8%(59명)와 비교하였을 때 다소 증가하였다. 동거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부부 74명 중 62명(88.8%⁵⁾)은 결혼기간에 축적된 갈등이 배우자와의 대화 또는 취미생활 공유 등을 통하여 부부관계를 재정립하지 못한 채 갈등이 지속되면서 집안일과 관련된 사소한 말다툼이 폭력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 한편 이 시기는 자녀양육이 주된 관심사가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부부 74명 중 18명(24.3%⁶⁾)은 자녀의 게임중독이나 비행 등 생활태도, 자녀의 학습태도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책임을 배우자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였다.

동 거 기 간 \ 구 분	수(명)	백분율(%)
1년 미만	2	0.6
1년 이상 ~ 5년 미만	81	25.2
5년 이상 ~ 10년 미만	68	21.2
10년 이상 ~ 20년 미만	74	23.1
20년 이상 ~ 30년 미만	44	13.7
30년 이상	52	16.2
합 계	321	100

2) 행위자의 폭력유형 및 폭력수준에 따른 분석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이 52.7%로 가장 많아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의 경우 결혼 이후 출산과 육아분담 문제로 인한 갈등에 기인한 경우 많아

2021년에 비해 신체적 폭력 감소

① 폭력유형별

폭력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부관계에서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이 52.7%(211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이 11.6%(47명)로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하면,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이 55.2%(191명)에서 52.7%(211명)로 다소 감소하였고,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이 10.4%(36명)에서 11.6%(47명)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부모-자녀관계에서는 자녀폭력이 8.5%(34명)로 가장 많았는데, 2021년과 비교하면 자녀폭력이 9.2%(32명)에서 8.5%(34명)로 다소 감소하였고, 부모폭력이 4%(14명)에서 5%(20명)로 다소 증가하였다.

남편에게 폭력을 한 아내 47명의 폭력행사 이유를 살펴보면, 동거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가 15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들 중 14명은 결혼 이후 출산과 육아 과정을 경험하면서 가사분담이나 육아분담의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부부간 갈등이 증폭되어 폭력적인 부부싸움으로 이어진 경우로 나타났다.

폭력유형 \ 구 분	수(명)	백분율(%)
부부 관계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	211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에 대한 아내의 맞대응	37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	47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에 대한 남편의 맞대응	26
부모-자녀 관계	자녀폭력	34
	자녀에 의한 부모폭력에 대한 부모의 맞대응	4
	부모폭력	20
	부모에 의한 자녀폭력에 대한 자녀의 맞대응	6
기타 가족 관계	동생에 의한 누나폭력에 대한 누나의 맞대응	3
	형에 의한 동생폭력	3
	동생에 의한 누나폭력	2
	오빠에 의한 동생폭력	2
	동생에 의한 형폭력	2
	언니에 의한 동생폭력	1
	며느리에 의한 시어머니 폭력	1
	손자에 의한 조부모 폭력	1
합 계	400	100

5) 폭력행사의 이유는 중복응답 가능한 항목이다.

6) 폭력행사의 이유는 중복응답 가능한 항목이다.

② 폭력행위의 수준

행위자의 폭력행위 수준을 살펴보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가 97%(388명)로 가장 많았다. 1주 이상 5주 미만의 상해를 입힌 경우도 2.5%(10명)에 달했다.

구 분 폭 력 수 준	수(명)	백분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	388	97.0
1주 이상 ~ 5주 미만	10	2.5
5주 이상 ~ 10주 미만	2	0.5
합 계	400	100

③ 폭력행위에 대한 사건분류

행위자의 폭력행위에 대한 사건분류를 살펴보면, 그 죄명이 '폭행'인 경우가 51.5%(206명)로 가장 많았고 이는 2021년 55.2%(191명)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그 다음으로 '재물손괴'가 6.3%(25명)로 많았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 폭력을 하지는 않았지만 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한 경우도 5.9%(24명)에 달했다.

신체적 폭력에 집중되어 있던 가정폭력사건이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서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확대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심각하게 체감하고 인식하여 법적 처벌을 요청하고 있었다.

구 분 폭 력 수 준	수(명)	백분율(%)
폭행	206	51.5
재물손괴	25	6.3
상해	24	6.0
폭행, 재물손괴	21	5.3
특수협박	15	3.7
특수폭행	13	3.2
존속폭행	13	3.2
폭행, 특수협박	11	2.7
협박	9	2.2
특수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8	2.0
특수재물손괴	7	1.8

구 분 폭 력 수 준	수(명)	백분율(%)
특수상해	6	1.5
보호처분집행감독	5	1.3
특수존속협박	4	1.0
특수존속상해	4	1.0
특수상해, 폭행	4	0.8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3	0.8
특수재물손괴, 폭행	3	0.8
폭행, 협박	3	0.8
특수협박, 재물손괴	3	0.8
존속폭행, 재물손괴	2	0.5
폭행, 상해, 특수협박	2	0.5
특수존속폭행	2	0.5
상해, 재물손괴	2	0.3
아동복지법위반, 폭행	1	0.3
폭행치상	1	0.3
특수협박, 특수폭행	1	0.3
특수공갈, 특수협박	1	0.3
주거침입	1	0.3
합 계	400	100

④ 폭력행위의 정도

좀 더 구체적으로 행위자의 폭력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통제 행동, 성적 폭력, 경미한 신체적 폭력, 심한 신체적 폭력 등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폭력 행동은 법원에서 접수한 보호처분결정문에 첨부된 범죄사실의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34개 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폭력 행동이 있으면 가해 경험으로 산출하였다.

행위자 모두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하는 정서적 폭력 행사해

첫째, 정서적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위자 400명 모두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을 하는 정서적 폭력이 있었다. 이러한 정서적 폭력은 신체적인 폭력과는 달리 그 피해가 가시적이거나 즉각적인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행위자들은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언어폭력으로

폭력행위 정도에 따른 분석

항 목	폭력행동 유무	
	없음(%)	있음(%)
정서적 폭력	-	400(100)
1. 모욕적인 말이나 욕을 했다.	-	400(100)
2.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337(84.2)	63(15.8)
3. 실제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셨다.	281(70.2)	119(29.8)
4. 피해자가 아끼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다.	370(92.5)	30(7.5)
5. 피해자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자해,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	373(93.2)	27(6.8)
6. 잠을 못 자게 괴롭혔다.	334(83.5)	66(16.5)
경제적 폭력	365(91.3)	35(8.8)
7.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371(92.8)	29(7.2)
8. 피해자의 재산 또는 피해자에게 지분이 있는 재산을 동의없이 처분하였다.	378(94.5)	22(5.5)
9.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	377(94.2)	22(5.8)
10. 돈이나 재산을 빼앗거나 빚을 떠넘겼다.	376(94.0)	24(6.0)
통 제	332(83.0)	68(17.0)
11. 친구들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했다.	373(93.2)	27(6.8)
12. 친정식구 또는 본가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했다.	375(93.7)	25(6.3)
13. 어디에 있는지 꼭 알려고 했다.	373(93.2)	27(6.8)
14. 무시하거나 냉담하게 대했다.	370(92.5)	30(7.5)
15. 바람을 피운다고 자주 의심하고 비난했다.	352(88.0)	48(12.0)
16.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에도 허락을 받도록 했다.	379(94.7)	21(5.3)
17.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는지 감시했다.	372(93.0)	28(7.0)
18. 사회활동(직업가기, 교육받기, 사회적 성취 등)을 못하게 하거나 허락을 받도록 했다.	370(92.5)	30(7.5)
19. 외출시간, 귀가시간 등을 허락받도록 요구했다.	372(93.0)	28(7.0)
20. 피임을 거부하거나 성관계 도중 합의없이 피임기구를 제거했다.	391(97.7)	9(2.3)
성적 폭력	389(97.2)	11(2.8)
21. 무력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했다.	393(98.2)	7(1.8)
22. 무력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했다.	392(98.0)	8(2.0)
23.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만지기, 키스, 포옹 등)을 했다.	391(97.7)	9(2.3)
24. 피해자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동의없이 촬영했다.	395(98.7)	5(1.3)
25. 피해자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동의없이 유포했다.	396(99.0)	4(1.0)
경미한 신체적 폭력	116(29.0)	284(71.0)
26. 피해자를 겨냥해서 물건을 던졌다.	325(81.2)	75(18.8)
27. 피해자를 세게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들었다.	211(52.7)	189(47.3)
28. 손바닥으로 뺨이나 다른 곳을 때렸다.	251(62.7)	149(37.3)
심한 신체적 폭력	154(38.5)	246(61.5)
29.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253(63.3)	147(36.7)
30. 피해자를 물건(책,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	349(87.2)	51(12.8)
31. 피해자를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300(75.0)	100(25.0)
32. 피해자 목을 졸랐다.	344(86.0)	56(14.0)
33. 피해자를 칼이나 흉기로 위협했다.	336(84.0)	64(16.0)
34. 피해자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칼이나 흉기로 휘둘렀다.	354(88.5)	46(11.5)

야기되는 수치감과 모욕감으로 인한 정신적 황폐함이 더욱 큰 상처로 남는 폭력이라고 호소하면서 폭력에 대한 민감성에서 행위자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행위자들은 상담처분을 이행하면서 신체적 폭력으로만 이해하였던 폭력의 정의를 상대방의 정서를 해치는 말이나 행동을 포함하는 정서적 폭력,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재물손괴도 폭력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는 등 폭력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졌다.

정서적 폭력 중 ‘실제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 경우’가 29.8%(119명)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21년 36.4%(126명)에 비해 그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10년 전인 2012년 22.7%(10명)에 비해 1.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겠다고 위협한 경우’는 15.8%(63명)로 2021년 47.4%(164명)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10년 전인 2012년 9.1%(4명)에 비해 1.8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행위자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피해자에게 중요한 물건 또는 가정 내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는 물건을 던지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는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았다. 가정폭력의 본질은 상대방에 대한 지배와 통제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행위자는 자신이 원하는 통제욕구에 기인하여 다양한 폭력적인 행동으로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위협하거나 협박하고 있었다.

이외 정서적 폭력 중 ‘잠을 못 자게 괴롭힌 경우’는 2021년 6.1%(21명)에 비해 16.5%(66명)로 2.7배 이상 증가하였다. 부부관계에서는 행위자인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피해자인 아내에게 특별한 이유없이 시비를 걸거나 행패를 부리면서 괴롭힌 경우가 가장 많았다(17명). 그리고 부모자녀관계에서도 자녀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면서 괴롭힌 경우가 많았다(13명).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러 주지 않는 경제적 폭력 많아

둘째, 경제적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 폭력이 있는 경우는 8.8%(35명)로 2021년 6.1%(21명)에 비해 1.5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경우’가 7.2%(29명)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부부가 의논하여 재산을 관리하지 않고 생활비 지출, 자녀양육이나 교육,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 하는 문제 및 재산관리를 행위자(주로 남편)가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경제력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제압하려는 행위는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가정폭력임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부부가 함께 의논해서 재산관리를 하는 등 평등한 부부관계를 조성할 수 있는 개개인의 인식개선 및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바람을 피운다고 자꾸 의심하고 비난하는 통제행위 많아

셋째, 통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제의 유형에서는 ‘바람을 피운다고 자꾸 의심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12%(48명)로 가장 많았다.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할 부부관계에서 상대방을 의심하고 비난하며 더 나아가 관리하고 감시하려는 통제 행위는 직접적인 폭력행위 없이도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인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부간에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은 삼가해야

넷째, 성적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적 폭력이 있었던 경우는 2.8%(11명)로 나타나 그 비율이 높지는 않았으나 2021년 1.4%(5명)에 비해 2배 증가하였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을 한 경우였는데(9명),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한 집에서도 따로 방을 쓰면서 부부간 유대관계가 소홀해져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라고 강요하거나 근거없는 의심을 하며 성적으로 배우자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2021년에 비해 신체적 폭력 감소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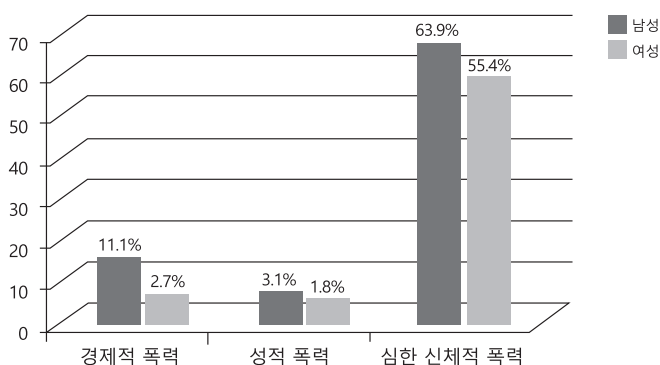
다섯째, 경미한 신체적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미한 신체적 폭력이 있는 경우는 71%(284명)로 나타나 2021년 81.2%(281명)에 비해 감소하였다. 경미한 신체적 폭력 중 ‘피해자를 세계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든 경우’가 47.3%(189명)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2021년 58.1%(201명)에 비해 감소하였다. 행위자는 피해자를 세계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드는 행위를 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부부갈등이 심화되어 서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말대꾸하거나 혼계하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한 수단 내지는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거나 밀쳐낸 것뿐이라며 자신의 폭력행위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여섯째, 심한 신체적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한 신체적 폭력이 있는 경우는 61.5%(246명)로 나타나 2021년 69.9%(242명)에 비해 감소하였다. 심한 신체적 폭력 중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 경우’가 36.7%(147명)로 가장 많았는데, 2021년 38.2%(132명)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심한 신체적 폭력이 있는 경우 2021년에 비해 모든 항목의 폭력행위가 그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분노조절에 실패한 행위자의 폭력은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심을 더욱 심하게 느끼게 하고 있었다.

아래의 표에서는 폭력행위 정도의 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7) 중복응답 가능한 항목임.

여섯 가지 폭력행위 중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 그리고 심한 신체적 폭력이었다. 즉 남성의 경우 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 그리고 심한 신체적 폭력을 여성에 비해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행위자의 폭력행사 이유에 따른 분석

폭력행사 이유 :

가부장적 사고 등 성격차이 → 부부간 불신
→ 경제갈등 등

행위자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은

불평등한 가치관을 강화시키고,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
가정폭력을 심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

① 폭력행사 이유

행위자가 상담위탁처분을 받게 된 사건에서의 폭력행사 이유를 분석한 결과,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등 성격차이(25.4%, 231건), 부부간 불신(16.4%, 149건), 경제갈등(14.4%, 131건) 순으로 나타났다.⁷⁾

첫째, 폭력행사의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등 성격차이(25.4%, 231건)로 나타났다.

행위자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은 부부간 불평등한 가치관을 강화시켜 가장인 남편 또는 아버지는 우월하고 존중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아내 또는 자녀는 상대적으로 열등한 약자이며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인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피해자가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다고’,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피해자가 높임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집안 정리를 하다가 피해자가 통명스럽게 말했다고’, ‘자신의 허락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게끔 하였다. 또한 성역할 태도에 있어서 이
 분법적인 사고방식 및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아침 밥상
 을 차려주지 않았다고’, ‘이틀 된 밥을 또 주었다고’, ‘여자
 가 잔소리를 해서 재수없다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이러한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은 육아문제와 자녀양
 육 방식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64건, 7.1%).
 영유아기 자녀를 둔 경우 가사와 양육을 평등하게 책임지
 기를 기대하는 아내와 가사노동이나 육아분담은 아내의 몫
 이라고 생각하며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유지하려는 남편
 간의 입장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폭력이 발생하였다(39건,
 4.3%). 아동 및 청소년기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 자녀의 학
 업이나 스마트폰 사용과 같은 생활태도 등의 문제를 지적
 하며 그 책임을 배우자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
 생하였다(25건, 2.8%).

둘째, 폭력행사의 원인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부부간 불신(16.4%, 149건)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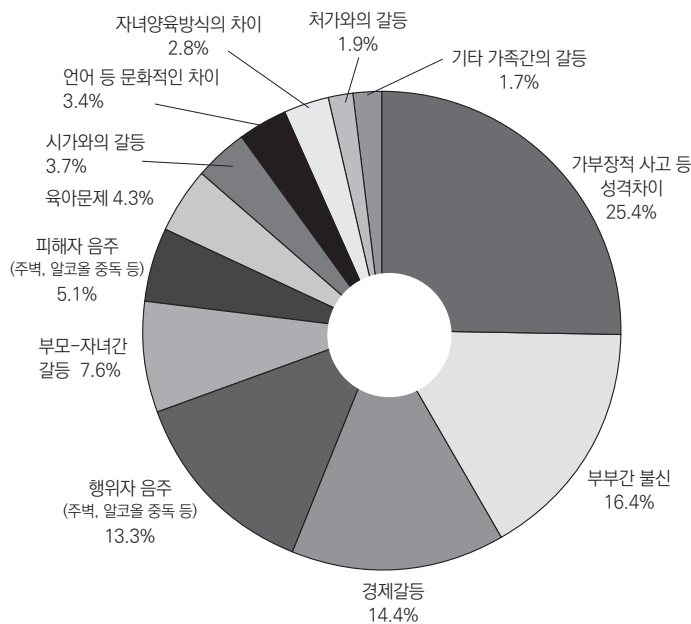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확대되면서 잦은 회식자리 참
 석과 늦은 귀가로 인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게 되어 폭력
 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았다. ‘피해자가 늦게 귀가한 것
 이 못마땅하여’,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에 남자문제
 를 의심하여’, ‘피해자가 밤늦게 누군가와 전화통화하는 것
 을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가 남자들이 있는 자
 리에 지인과 술을 마시러 갔다’는 등의 이유로 폭력을 행사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의 과거 또는 현재의 외도, 이
 로 인한 상습적인 거짓말 등이 아내로 하여금 남편을 불신
 하게 만들어 부부갈등이 증폭되면서 남편을 폭력한 경우도
 있었다.

셋째, 폭력행사의 원인 중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
 지한 것은 경제갈등(14.4%, 131명)으로 나타났다. 2019
 년 11.4%(65명)에 비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20년
 13.6%(60명), 2021년 13%(115명), 2022년 14.4%(131
 명)로 점차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한 상황
 에서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실직, 실직 이후 고용이 불안정
 해지면서 빚이 증가하는 등으로 인해 가정경제의 빈곤이

증가하였다.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면서 이로 인한 무력감과 경제활동에 대한 불안심리가
 가정불화로 이어져 갈등이 증폭되면서 폭력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부부간 경제상황을 투명하게 하지
 않는데서 오는 불신, 아내와 자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
 로서 경제적 통제를 가하는 것 등이 경제갈등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 중복응답 가능한 항목임.

구 분	수(건)	백분율(%)
폭력행사 원인		
가부장적 사고 등 성격차이	231	25.4
부부간 불신	149	16.4
경제갈등	131	14.4
행위자 음주(주벽, 알코올 중독 등)	121	13.3
부모-자녀간 갈등	69	7.6
피해자 음주(주벽, 알코올 중독 등)	46	5.1
육아문제	39	4.3
시가와의 갈등	34	3.7
언어 등 문화적인 차이	31	3.4
자녀양육방식의 차이	25	2.8
처가와의 갈등	17	1.9
기타 가족간의 갈등	15	1.7
합 계	908	100



[그림 2. 폭력행사 이유]

4) 행위자의 상담요인에 따른 분석

피해자 등 상담 병행 70.5%

행위자 중 74%가 다양한 프로그램 경험

① 상담대상자별

법원에서 피해자 상담을 병행하도록 권유한 경우는 55.3%(221명)에 달해 2021년 11.3%(39명)에 비해 4.9배 가까이 그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는 가정보호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의 상담 욕구와 동의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본 상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상담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그리고 자녀 또는 부모 등 가족을 함께 상담한 경우가 70.5%(282명)로 나타났다. 이는 상담처분을 통해 대다수 피해자인 아내가 행위자인 남편의 폭력이 중단되어 관계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며 변화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구 분 상담대상자	수(명)	백분율(%)
행위자 본인상담	118	29.5
행위자 본인·배우자·기타 가족상담	282	70.5
합 계	400	100

② 상담방법별

2022년 본 상담소의 가정폭력행위자 상담은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음주문제 상담, 집단상담, 교육강좌, 부부캠프, 최종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등 총 6단계로 진행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대면상담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 및 대면상담으로 유연하게 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자조모임인 라오니 모임 역시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1단계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은 행위자의 현재 개인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부부 및 가족관계에서 핵심적인 문제를 사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와의 화해조정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상담 또는 부부상담/가족상담을 통하여 조정을 시도한다. 상담횟수는 행위자의 생업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2022년도에는 4,367건의 개별상담, 296건의 부부상담, 108건의 가족상담이 실시되었다.

2단계 음주문제 상담은 음주문제가 가정폭력 및 부부갈등의 주요원인이 되는 행위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음주문제 상담에서는 음주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행위자 및 피해자의 음주문제를 진단하고 알코올문제 대처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2022년도에 음주문제 상담은 행위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 집단상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행위자 대상 집단상담은 총 15회로 201명이 참석하였으며, 피해자 대상 집단상담은 총 15회로 82명이 참석하였다.

3단계 집단상담은 관련분야 전문가의 진행에 따라 집단 구성원들과의 토론 및 상호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2년도에는 행위자를 대상으로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 집단상담을 진행하였다. 행위자 집단상담은 매주 수요일 총 44회 실시되었으며, 총 166명이 참석하였다.

4단계 교육강좌인 「등지교실」은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도울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총 10회의 교육강좌가 실시되었고 총 347명이 참석하였다.

5단계 부부캠프는 진행되어온 상담을 토대로 부부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부부 및 가족원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1박2일(주말)에 걸쳐 실시되는 프로그램인데,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지 못하였다. 부부캠프는 상담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후관리 프

로그래프로 활용하고 있다.

6단계 최종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은 6개월의 상담위탁기간 동안 일련의 상담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폭력 인식에 대한 재검토 및 부부 및 가족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변화의 의지를 다지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22년도에는 총 706명의 행위자 및 피해자가 최종 개별상담을 통하여 폭력중단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부부 및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였다.

가정폭력피해여성 자조모임인 라오니모임은 가정폭력의 재발가능성을 차단하고 개인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22년도에는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총 20회의 자조모임이 실시되었고 305명이 참석하였다. 이외에도 정신과 치료연계가 필요한 가정폭력피해여성 5명에서 진료 및 상담, 약 처방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상담 프로그램을 비대면 및 대면으로 유연하게 진행한 결과, 2022년에 상담이 종료된 400명 중 74%(296명)에 달하는 행위자가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뿐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집단상담 등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구 분 상 담 방 법	수(명)	백분율(%)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104	26.0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 교육프로그램	32	8.0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 집단상담	86	21.5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 교육프로그램 · 집단상담	178	44.5
합 계	400	100

5) 가정폭력상담의 효과성 :

상담종료시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자의 폭력중단

부부는 상담종료 이후 53.6%가 화해 · 동거

① 부부관계

가. 폭력재발 여부

우선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부부인 경우 321명의 상담 종료시 폭력재발 여부 및 관계회복 여부를 살펴보았다. 상담처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상담종료시까지 98.1%(315명)가 폭력의 재발이 없었다. 폭력이 재발된 6명은 상담위탁처분이 6개월 기간연장(5명) 또는 음주문제로 인한 폭력재발로 치료위탁(1명) 되어 폭력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고 폭력의 재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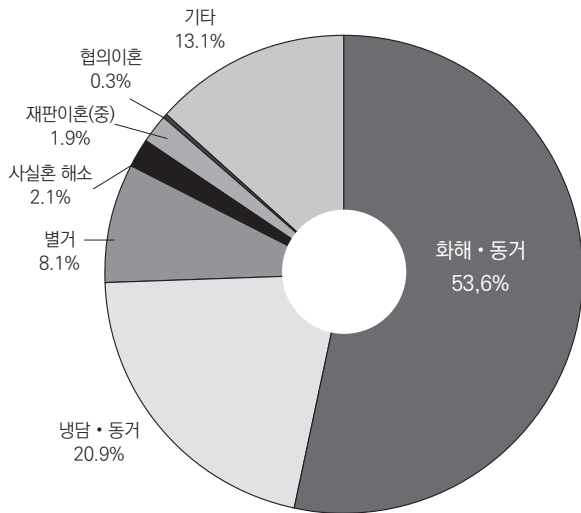
구 분 상담처분 중 폭력재발여부	수(명)	백분율(%)
폭력재발 없음	315	98.1
폭력재발 함	6	1.9
합 계	321	100

나. 부부관계 회복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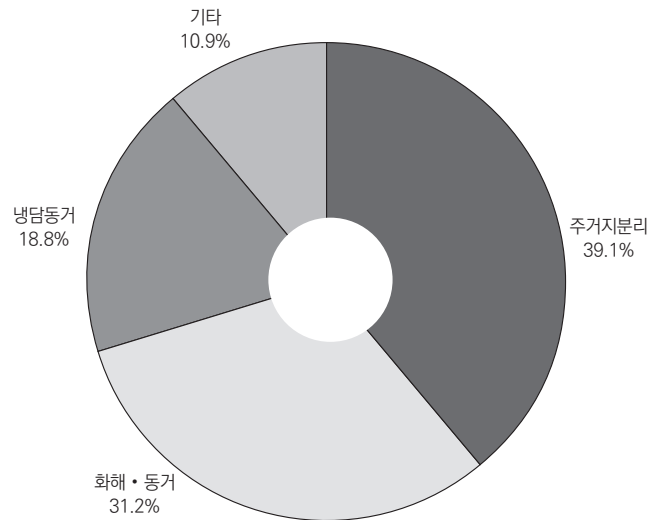
부부관계 회복여부를 살펴보면, 행위자와 피해자가 관계를 회복하여 화해하고 동거하는 경우가 53.6%(172명)로 가장 많았다.

구 분 상담종료 후 부부관계	수(명)	백분율(%)
화해 · 동거	172	53.6
냉담 · 동거	67	20.9
별 거	26	8.1
사실혼 해소	7	2.1
재판이혼(중)협의이혼	6	1.9
협의이혼	1	0.3
기 타 ⁸⁾	42	13.1
합 계	321	100

8) 기간연장(8.1%, 26명), 보호처분 변경(4.1%, 13명), 보호처분 취소(0.9%, 3명) 등을 포함하였다.



[그림 3. 상담종료시 부부관계]



[그림 4. 상담종료시 부모자녀관계]

② 부모자녀관계

가. 폭력재발 여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부모자녀인 경우(64명), 상담 처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상담종료시까지 98.4%(63명)가 폭력의 재발이 없었다. 폭력이 재발된 1명은 보호관찰로 처분이 변경되어 폭력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고 폭력의 재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되었다.

구 분	수(명)	백분율(%)
상담처분 중 폭력재발여부		
폭력재발 없음	63	98.4
폭력재발 함	1	1.6
합 계	64	100

나. 부모자녀관계 회복 여부

부모자녀관계 회복여부를 살펴보면, 행위자와 피해자가 주거지를 분리한 경우가 39.1%(25명)로 가장 많았다.

구 분	수(명)	백분율(%)
상담종료 후 부모자녀관계		
주거지 분리	25	39.1
화해·동거	20	31.2
냉담·동거	12	18.8
기 타	7	10.9
합 계	64	100

III. 맺음말

2022년 한 해 동안 서울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등으로 부터 가정폭력처벌법상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아 상담을 종료한 행위자는 총 400명이었다. 가정폭력행위자 상담 통계의 주요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이 288명(72%), 여성이 112명(28%)로 남성 행위자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여성 행위자 112명 중 88명(78.6%)은 피해자와 부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에서 남편의 폭력이 여전히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아내들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대항하여 방어 또는 생존의 수단으로 폭력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행위자의 무직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는 그 비율이 6.2%(16명)이었는데, 2020년 11%(21명), 2021년 14.7%(51명)로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으나, 2022년에는 팬데믹 회복세로 인해 11.6%(46명)로 소폭 감소하였다.

셋째, 다문화가정에서의 폭력이 증가하였다. 행위자와 피해자가 부부관계인 경우,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배우자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이 11.5%(37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4.5%(6명), 2018년 6.9%(18명), 2019년 8.3%(19명), 2020년 15.2%(23명), 2021년 9.5%(33명)와

9) 기간연장(6.3%, 4명), 보호처분 변경(4.7%, 3명) 등을 포함하였다.

비교했을 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하는 것과 동시에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한 사회 안정망이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넷째, 행위자와 피해자가 부부관계인 경우, 동거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25.2%, 81명)에 폭력발생이 가장 많았다. 이들 부부 81명 중 39명(48.2%¹⁰⁾)이 육아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았는데, 가사와 양육을 평등하게 책임지기를 원하는 아내와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유지하려는 남편 간의 입장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폭력이 발생하였다. 동거기간이 짧더라도 행위자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여 통제와 제압을 함으로써 부부관계에서 권력을 획득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자 하는 반면, 피해자는 폭력을 참거나 묵인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가정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폭력의 유형으로는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이 52.7%(211명)로 가장 많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은 배우자인 남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남편에게 폭력을 한 아내 47명의 폭력행사 이유를 살펴보면, 동거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가 15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들 중 14명은 결혼 이후 출산과 육아 과정을 경험하면서 가사분담이나 육아분담의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부부간 갈등이 증폭되어 폭력적인 부부싸움으로 이어진 경우로 나타났다.

여섯째, 폭력행위에 대한 사건분류는 ‘폭행’이 51.5%(206명)로 가장 많았지만, ‘재물손괴’와 ‘협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신체적 폭력에 집중되어 있던 가정폭력사건이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서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확대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심각하게 체감하고 인식하여 법적 처벌을 요청하고 있었다.

일곱째, 행위자 400명 모두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을 하는 정서적 폭력이 있었다. ‘잠을 못 자게 괴롭힌 경우’는 2021년 6.1%(21명)에 비해 16.5%(66명)로 2.7배 이상 증

가하였다. 부부관계에서는 행위자인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피해자인 아내에게 특별한 이유없이 시비를 걸거나 행패를 부리면서 괴롭힌 경우가 가장 많았다(17명). 그리고 부모자녀관계에서도 자녀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면서 괴롭힌 경우가 많았다(13명).

여덟째, 2021년에 비해 신체적 폭력은 감소하였다. 경미한 신체적 폭력이 있는 경우는 71%(284명)로 나타나 2021년 81.2%(281명)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며, ‘피해자를 세게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든 경우’가 47.3%(189명)로 가장 많았다. 한편 심한 신체적 폭력이 있는 경우는 61.5%(246명)로 나타났다. 심한 신체적 폭력 중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 경우’가 36.7%(147명)로 가장 많았다.

아홉째, 여섯 가지 폭력행위(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 통제 행동, 경미한 신체적 폭력, 심한 신체적 폭력) 중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 그리고 심한 신체적 폭력이었다. 즉 남성의 경우 경제적 폭력(11.1%), 성적 폭력(3.1%), 그리고 심한 신체적 폭력(63.9%)을 여성에 비해 많이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째, 행위자의 폭력행사 이유는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등 성격차이(25.4%, 231건), 부부간 불신(16.4%, 149건), 경제갈등(14.4%, 131건) 순으로 나타났다. 행위자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은 부부간 불평등한 가치관을 강화시켜 가장인 남편 또는 아버지는 우월하고 존중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아내 또는 자녀는 상대적으로 열등한 약자이며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인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열하나째, 상담종료시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통해 가정폭력상담의 효과성을 살펴본 결과, 행위자와 피해자가 부부인 경우(321명) 98.1%(315명)가 폭력의 재발이 없었고, 행위자와 피해자가 관계를 회복하여 화해하고 동거하는 경우가 53.6%(172명)로 가장 많았다. 본소는 상담이 종료된 이후에도 행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전화상담 또는 교육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차연실 상담위원

10) 폭력행사의 이유는 중복응답 가능한 항목이다.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 (8)

알코올 중독자 가족들의 특징

알코올 중독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며 생활하는 가족들, 특히 아내와 자녀들이 삶의 조절이 불가능해지고 문제대처를 건강하게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공동의존’이라고 합니다. 이는 알코올 중독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도 술 문제로 병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가족들은 공동의존 증상과 그 유형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며, 중독자의 치료와 이러한 가족들의 치료가 병행되어야 상대방의 상태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1. 공동의존

1) 공동의존의 정의

억압적인 규칙과 습관들에 오랫동안 노출된 결과, 개인적 혹은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서·심리·행동상태를 말합니다.

공동의존 상황에 놓이는 공통의 환경은 문제가 있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의존적인 사람과 개인적 혹은 직업적으로 인간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 내의 불문화된 규칙들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 규칙이란 열린 마음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 직접적이고 정직한 의사소통, 사람은 상처받기 쉽고 완벽하지 않은 존재라는 현실적 기대, 이기주의, 타인과 자신에 대한 신뢰, 즐겁게 노는 것, 그리고 성장과 변화에 따라 균형 잡힌 가정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 등을 언급하고 토론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알코올중독자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2) 공동의존의 반복적 행동패턴

① 구원자

돌보는 사람의 무능력을 전제로, 자신이 상대방을 위해하고 있는 일들을 상대방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필요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낍니다.

② 박해자

구원하는 일을 마치면 자연스럽게 ‘박해’ 단계로 이동하는데, 그동안 관대한 마음으로 돌봐왔던 사람에게 분을 품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구원해주었던 초라한 상대방이 베풀었던 도움과 희생에 충분히 고마워하지 않는 등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을 때 구원자의 후광을 접고 날카로운 날을 세웁니다.

③ 희생자

구원의 필수적인 결과물로 자신의 가치를 다시 인정받지 못했다는 무기력과 상처받음, 서글픔, 창피함 그리고 자기 연민들로 소진됩니다.

- 가정폭력예방지침서 ② 음주문제예방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 중에서

* 상담소는 일찍부터 우리 사회에 가정폭력의 문제를 제기하여 가정폭력특례법 제정을 이끌어냈으며, 법의 제정 이후에는 가정폭력상담소로써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가정폭력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03년부터 ‘가정폭력예방지침서’ 시리즈를 발간하기 시작하였고 시리즈의 하나로 2006년부터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발행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음주관련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상담소는 가정폭력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음주문제상담을 일반인들에게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한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가정상담>에도 이 자료를 게재한다.

위기가정 SOS 상담전화 운영 및 가정과 미래사회 준비사업 (1)

2005년 6월 ~ 서울시 지원 ‘위기가정 SOS’ 사업 실시

법률구조기관으로 그리고 가정문제 전문 상담기관으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한 상담소는 해마다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깊이와 전문성을 더해가게 되었다. 2005년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와 진행한 ‘위기가정 SOS 상담전화 운영 및 가정과 미래사회 준비사업’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이 사업은 상담소 교육부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되었으며, 이때 개발된 프로그램들은 추후 상담소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현대사회에서 가속화하고 있는 가족구조·가족의식의 변화·가족해체 증가 그리고 가족문제의 다양화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의 기반을 마련하여 가정문제로 변민하는 시민들에게 종합적인 체계에 따른 상담과 교육, 법률서비스 등을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제공하고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상담소는 이 사업과 연계하여 가정문제로 고민하거나 고통받는 시민들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내담자의 요구와 필요 정도에 맞추어 심리적·치료적·법률적 영역에서의

개별상담을 비롯한 심화상담 및 치료 개입 과정, 다양한 집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화해조정 및 소송 서류 대서 등과 같은 법률 서비스 제공 등을 생애주기에 맞춰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과 가족구성원의 복리를 기하는 한편 다양한 정책개발을 통해 21세기에 맞는 가정문제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자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미혼남녀, 혼인 중, 이혼을 앞둔 경우, 별거가정, 이혼가정, 재혼을 앞둔 경우, 재혼가정, 가정폭력 피해여성, 노인 등을 혼인 전부터 혼인과정 그리고 이혼 및 이혼 후와 재혼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초년, 중년, 노년 등 각 연령대에 맞춰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크게 ‘위기가정 SOS 상담전화’ 운영 지원사업과 가정해체 예방 및 건강가정 기능 강화 사업, 가족 유지 및 사회발전을 위한 사업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편집부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변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음주문제가 가정폭력의 주된 요인이거나 심화 요인인 경우 전문적인 음주문제상담이 도움 돼

2020버3*** 특수협박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5회, 전화상담 1회,
교육강좌 1회(Zoom Cloud Meeting
앱 사용, 비대면 진행),
집단상담 4회(비대면 진행),
음주문제 상담 6회(비대면 진행)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1회
등 18회

상담기간

2021. 3. 11. ~ 2021. 9. 15.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지 26년이 경과하였으며 부부 사이에 2남(26세, 25세)이 있다. 행위자는 2020. 10.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이웃집이 시끄럽다고 창문 밖으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와 함께 행위자의 손목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던 진외 큰아들이 방을 나가자 격분하여 등산 가방에 보관 중이던 등산용 칼을 꺼내 손에 들고 큰아들을 죽이겠다며 방을 나가려 하였는데, 함께 방에 있던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으며 나가지 못하게 하자 들고 있던 칼을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에 들이밀며 ‘너도 죽인다’고 협박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본소에 의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았다.

초상담시 행위자는 자신도 피해자도 평소 폭력은 하지 않았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와 화해하고 잘 지내고 있고, 충돌이 없으며, 자녀들도 모두 일을 하여 서로 마주칠 기회가 많지 않다고 하였다. 현재 상태에 불만이 없고 상담에 대한 기대도 없으나, 상담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다짐하였으며 상담에 성실히 임하였다.

행위자는 음주문제상담에서 ‘술을 잘못 마시면 파충류가 된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고 하면서 이전에도 인사불성으로 음주를 하지는 않았고 현재는 1주일에 1~2회, 소주 1병씩을 집에서 마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 의하면 행위자는 1주일에 4~5회 음주하며, 알코올 함량이 높은 소주를 마시면 많이 취한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집에서 음주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음주를 하더라도 1주일에 1~2회 정도 알코올 함량이 낮은 소주를 마시기 바랐다.

행위자는 상담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마음에 위안을 얻었다. 또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기보다 자신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 즐겁게 웃으며 살려고 노력하였다. 행위자의 마음과 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피해자와 다른 음주보고는 행위자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수치심 때문에 은폐 또는 축소하는 것으로 보였다.

종결상담시 행위자는 1주일에 2회, 소주 1병씩 음주한다

고 보고하고, 술을 전혀 하지 못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주를 원할 수 있지만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음주수준이라고 하였으며 현재 부부관계 만족도를 10점 만점에 9점으로 평가하였다. 피해자도 행위자의 현재 음주수준을 수용하였다. 행위자에게 향후 폭력을 재발하지 말고, 현재 음주수준을 유지하도록 당부하면서 상담을 종결하였다.

2020버1*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20버2***폭행(병합)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5회, 교육강좌 5회(Zoom Cloud Meeting 앱 사용, 비대면 진행),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1회
등 11회

상담기간

2021. 3. 16. ~ 2021. 9. 15.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지 20년이 경과하였고, 부부 사이에 2남(18세, 14세)이 있다. 피해자가 중학교 동창과 외도하였다고 생각하면서 2019. 12.부터 부부갈등이 초래되었으며 이를 힘들어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였다. 행위자는 90세 노모가 받을 충격, 7년 전 교통사고로 치료 중인 아들, 피해자의 외도 전 부친이 별세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혼을 반대하였다. 그러던 중 2020. 4. 사건당일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목검을 집어 때릴 듯이 들어 올리는 협박을 하였으며, 또다른 피해자인 아들(17세)이 목검을 빼앗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아들의 복부를 2회 폭행하였다. 또한 2020. 8. 사건당일에는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러한 사건들로 행위자는 6

개월간 본소예의 상담위탁과 보호관찰을 병과받았다. 경찰 신고는 피해자가 처음 신고한 것이다.

사건 이후 부부는 화해하였다. 행위자는 상담에 수용적 이었으며, 피해자와 잘 지내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였다.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처럼 앞으로도 자신이 먹은 밥그릇은 자신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실천과제를 정하였다. 행위자가 인력사무실에 매일 나가 단순노무를 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상담 계획을 수립하였고, 행위자는 그에 따라 성실하게 상담에 임하였다.

중간점검 결과 피해자는 행위자가 상담기간 동안 폭력을 하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으며, 잔소리를 하지 않았고, 일도 열심히 하여 경제적으로도 기여하고 있다고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또한 행위자와의 관계만족도를 사건 당시에는 0점, 현재는 10점 만점이라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상담 종결시에도 같았다.

종결상담에서 행위자는 피해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외도를 확신하지만 가정을 유지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과거사로 마음을 내려놓았고 아이들을 생각하여 잊고 살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상담기간 중 피해자에게 욕설, 폭력, 의심을 하지 않았으며, 열심히 살았고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성심껏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폭력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2020버8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2020버1***) 재물손괴 등 (병합) (김민균)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아버지) 개별상담 5회, 전화상담 3회,
교육강좌 1회(Zoom Cloud Meeting 앱 사용, 비대면 진행),
음주문제상담 3회(비대면 진행)
등 12회

상담기간

2021. 3. 24. ~ 2021. 9. 23.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딸, 23세)의 아버지이다. 행위자는 2020. 2. 사건당일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폭언하고, 피해자가 맞대응을 하자 공구통에서 노루발장도리를 들고 왔는데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려하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방문을 여러 차례 쳐서 손괴하였다. 또한 2020. 5. 사건당일에는 피해자의 이름을 수차 불렀음에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대 때리는 폭행을 하였고 2020. 5. 또 다른 사건당일에는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현관문 유리 1개를 깨트리는 재물손괴를 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폭언, 협박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보호관찰과 본소예의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행위자는 2년 전부터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아내의 약국 직원으로 근무한다. 자녀는 2녀가 있으며 본건 피해자인 둘째 딸은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행위자는 피해자와 이전부터 충돌이 잦았고 경찰에 상호간 신고도 했던 사실이 있다. 행위자는 본건과 관련하여 폭행 사실을 인정하였고, 자신에게 맞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폭언, 폭행도 있었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피해자의 늦은

귀거나 옷 문제 등 생활태도를 지적하면서 피해자와 갈등이 잦았다.

행위자는 상담을 통하여 자신이 아내나 가족들에게 폭력 대화를 했고, 스트레스를 가족들에게 풀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핑계로 삼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자신에게 잘해주었기 때문에 더 바랄 바가 없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아버지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하여 과거 아이들이 어릴 때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였고, 술을 많이 마셨으며 경제적으로도 부족한 아버지였다고 평가하고, 현재도 아버지 역할 점수가 10점 만점에 4점으로 많이 부족하며, 장차에는 지금보다 더 나쁘지 않은 아버지이고 싶다고 다짐하였다.

행위자는 실천과제로 가사 참여와 절주를 정하고 노력하였다. 집에서 음주할 때에는 방에서 혼자 조용히 마시고 큰 소리를 내거나 주사를 하지 않았다. 12년간 금연하다가 보호처분을 받고 흡연하였는데 상담을 받으며 다시 금연을 실천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 비난이나 지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행위자가 이미 행하는 바대로 자녀에게 비난보다는 본보기가 좋은 지침이 된다는 점을 당부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이 혼 19

● 위자료를 나누어 받을 수도 있다

Q 문 73 | 남편의 폭행 등으로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재산이 없으나 매월 월급은 많이 받고 있는데, 현재 가진 재산이 없으면 위자료를 받지 못하나요?

A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판결을 받으면 남편이 소유한 재산이 없더라도 남편이 받는 월급의 일정 부분을 압류하여 판결 받은 액수에 달할 때까지 나누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 이혼을 먼저 제의했다고 위자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Q 문 74 | 저의 남편은 사소한 일로 다투더라도 항상 손찌검을 합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 반복되기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어 때리려면 차라리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저에게 위자료를 내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이혼을 하자고 하면 위자료를 주어야 하나요?

A 먼저 이혼하자는 말을 했다고 하여 위자료 지급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사유의 발생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인정됩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 위자료는 아내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Q 문 75 | 아내가 집을 나가 1년 이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제 가정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파탄 상태입니다. 아내는 본래 재산이 있고 직업도 있어 여유 있게 살고 있는데 만약 이혼할 경우 남편인 저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위자료 지급 책임은 성별에 관계없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에서 지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아내의 가출과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아내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제2호, 제843조, 제806조).

●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Q 문 76 |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너무 고통스러워 이혼을 고민 중입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 대하여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 할까요?

A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



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따라서 귀하는 배우자 및 그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중에서



Q 20년 전 결혼했고 저는 아내로서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 결혼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계속해서 외도를 일삼았고 현재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의 부정행위 때문에 제가 이혼을 요구할 때마다 남편은 매번 각서를 썼습니다. 3년 전에도 한 번 더 여자관계가 있을 때에는 협의이혼을 하고 전 재산을 제게 준다는 각서를 써 주어 보관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안 되면 재판이혼이라도 할 예정인데 남편이 써 준 각서가 있으니 재산은 모두 제 것이 될까요?

A 남편이 아내에게 전 재산을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각서 작성 이후에도 혼인생활을 계속한 것은 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라기보다 부부간의 불화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에 대하여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므318, 325 판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 행해지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가리키는데,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부부가 협의이혼 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따라서 귀하가 가진 각서로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 시 청구하지 못했다면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김진영 상담위원



나의 첫 해외 경험은 1992년 일본에서 열린 '원수폭금지세계대회' 참관이였다. 우리 민족과 역사에 대한 절대 가해자인 일본 그리고 세계 최초의 - 유일이기를 바란다 - 원폭 피해국인 일본을 마주하는 심경은 참으로 묘할 수밖에 없었다. 히로시마에 있는 평화기념관, 일명 원폭 돔은 원폭 피해의 흔적을 고스란히 남겨 둔 곳으로 유명하다. 기념관의 전시물은 원폭에 대한 공포를 통해 왜 인류 전체가 이 무기를 거부해야 하는가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 계단에 앉아 있던 사람이 그림자처럼 흔적만 남긴 사진은 그 어떤 것보다 공포스러웠다.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이자 평화운동가로 평생을 살다 간 나가이 다카시의 단가 구절이 떠오르기도 했다. 의사였던 그가 출근했다가 원폭이 터진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의 골반이었던 부분만 남아있었다던가, 그런데 이 히로시마 원폭 평화기념관에서도 가장 역울하기 그지없을 재일 조선인 피해자들의 추모탑은 평화기념관 안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기념관 밖에 외로이 있었다. 이런 현실 앞에서 그 조선인의 후손으로서 원폭은 반대하지만, 일본이 원폭을 맞은 것은 침략자로서 자초한 귀결 아닌가, 피해자인 척만 하는 것은 가증스럽다는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나가사키에서도 그랬고, 오키나와에서도 그랬다. 곳곳에 있는 조선인 위령탑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분노했다. 지금은 이 대회가 열릴 즈음이고 우리에게도 광복절이 다가오는 때다. 이 무렵 박경리 작가의 유고 산문 『일본산고』를 읽었다.

이 책 『일본산고』는 작가가 『토지』를 완간한 이후 본격적인 일본론을 쓰겠다는 기획으로 쓴 미발표 육필 원고와 생전에 발표한 일본 관련 글들을 모아 엮은 책이다. 1926년생으로 식민지 체험 세대였던 그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세대가 사라지면 이러한 글을 쓸 사람이 없으리라며 일본이 두 번 다시 입 못 때도록 다음 세대를 위한 일본론을 남기겠다는 사명감을 드러낸 바 있다고 한다.

2008년 그가 타계하면서 세상에 나오지 못할 뻔 한 이 책은 유족이 유품 정리 중 원고를 발견, 이후 문화평론가 이승윤 교수 등과 함께 갈무리해 출간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승윤 교수는 『토지』가 소설로 쓴 일본론이라면 『일본산고』는 실제적인 현재진행형의 일본론이라고 소개하였다. 일제강점기를 겪은 지식인 박경리가 일본의 반성 없는 태도, 죽대 없는 식자들이 일본의 시각에 동조하는 현상을 지켜보면서 뚜렷한 역사 인식을 토대로 철저한 조사를 거쳐 쓴 『일본산고』는 우리가 비극적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가 남겨준 일종의 '일본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공영방송의 이사가 '개화 덜된 조선인' 운운하며 '일본은 육일승천하는데 우리는 전근대' 운운하는 오늘의 역사는 한숨이 나온다. 이런 발언을 뒷방에서 훈장말이 아니라 공공연히 하는 이 시대가 정말 관참은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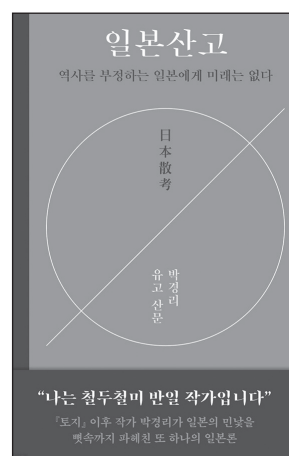
이숙현 편집부장

일본산고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에게
미래는 없다

박경리 유고 산문

다산북스, 2023



우리집

감독 윤가은

출연 김나연, 김시아, 주예림, 안지호



12살 하나(김나연)는 매일 다투는 부모님 때문에 고민이 많다. 하나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맞벌이 부부인 부모님과 중학생 오빠 찬(안지호)은 언제나 집에 없고, 하나는 혼자 장을 봐서 저녁상을 차린다. 그러다가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친 유미(김시아)와 유진(주예림) 자매와 가까워진다. 유미와 유진의 부모님은 도배일 때문에 지방 공사 현장에 내려가 한 달 가까이 집을 비운 상태다. 그런데 유미 자매의 집 주인은, 유미네 부모님이 집을 내놨다면서 이사 갈 준비를 하라고 채근한다. 벌써 6, 7번이나 이사를 다녀서 그게 너무 싫은 유미 자매의 고민을 듣던 하나는,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유미네 가족도 지킬 것이라 다짐한다.

“우리집은 왜 이럴까?” 유미와 하나가 돌아가며 한 번씩 소리 내어 한탄하는 문장. 태어나보니 나는 지금의 우리 가

족 구성원이 되어 있었다. 가장 가까운 혈연으로 이어져 있지만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가족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최약자는 언제나 아이들이다. 아이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부모의 결핍된 어떤 부분을 개선 시키기 위한 대체품이 아니라는 사실은 간단히 무시될 때가 많다. 상해를 입히거나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만 어른의 잘못이 아니라, 아이들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독립체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잘못이다. 이를테면, 아이는 어른들의 고민과 고단한 일상을 이해할 수 없으니 아이에게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전달되지 않게 하려면 일체의 고민으로부터 배제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반드시 옳을까?

윤가은 감독은 <우리집> 제작 노트에서 “아이들은 가족을 구성하는 당당한 일원으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능동적 주체이며, 어떻게 하면 가족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한다”고 썼다. 그 말처럼 <우리집>의 아이들은 가슴 아프게도 일찍 철이 들어버렸다. 하나는 늦은 퇴근길에서 돌아오자마자 서로의 피곤한 얼굴을 향해 불만을 쏟아내며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만 내세우는 부모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자꾸 눈치만 늘어간다. 유미는 집을 비운 채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는 부모님과, 어른들의 부재 동안 자주 들러서 아이들을 챙겨주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삼촌에게 거의 방치되다시피 버려졌지만 어린 동생 유진의 손을 이끌고 자신이 무엇이든 챙



겨 나가야 한다. 아이들을 학대하지 않았다, 최소한 아이들을 굶기지 않는다,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도 억지로 참고 살았다는 핑계는 어른으로서 무책임한 태도일 뿐 아니라, 자신의 어린 시절을 망각해버린 무신경함의 증거일 뿐이다. 어른이 불행하거나 무신경하면 아이들도 행복할 수 없다. 이는 아이들을 위해 어른이 모든 걸 맞춰주고 희생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집>의 아이들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지키기 위해, 상처받은 마음을 분노로 쏟아내며 상대방에게 똑같은 상처를 되갚아주려는 게 아니라, 그 상처마저도 포용하고 진심 어린 애정을 숨김없이 표현할 줄 안다. 이 아이들이 이만큼 가족을 사랑하는 건 적어도 부모님의 예전의 모습에서 사랑과 행복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어른이라면 아이들의 그 진심을 고맙게 받아들이고, 달라진 현재의 불운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시켜야 한다. 아이를 자신의 삶에서 무조건적인 보호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존중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이 영화에서 가족을, 집을 지키려는 아이들의 노력이 어른들을 감동시키거나 조건 없는 화해의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 영화가 끝날 때쯤 아이들도 그 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여름방학의 시작부터 2학기 개학 날 즈음까지, 그 두 달여 동안 진심을 다해 노력했다는 것, 고민 많고 아픔 많았던 시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고 자신의 속내를 깊이 들여다보는 경험을 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훌쩍 성장한 아이들의 일상이 담백하게 담겨 있다. 어른이 쓰고 만든 영화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아역 배우들과의 오랜 소통과 신뢰가 단단하게 담겨 있으며, 너무 일찍 삶의 고단함과 어둠을 엿보게 된 아이들의 그늘까지 사려 깊게 담아낸 흔적이 역력하다. 옥

인동과 정릉 일대에서 촬영한 영상은 과도한 미화 없이도 따뜻하고 아름답다. 아이들의 예측하기 어려운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따라다니는 핸드헬드 촬영도 꾸며낸 기색 없이 최대한의 자연스러움을 담보한다.

김용언 영화칼럼니스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습을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본소에서 실무수습을 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소감을 싣는다.

현 승 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무수습을 시작할 때 학부 때 배운 한국 가족 중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돕는 현장을 체험해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실무수습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먼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 가정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깨는 시간이었습니다. 학부 때, 한국 가족과 관련된 여러 수업을 들으며 한국 가족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쌓았다고 생각하였지만, 자조 모임에서 가정 폭력 피해자께서 하는 이야기와 상담하러 오신 분들의 이야기, 동지 교실에서 행위자들의 교육 소감을 들으며 책으로 혹은 수업으로만 알던 한국 가족과 어떻게 다르고 어떤 점은 같은지 비교해보며 한국 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무수습에서 여러 가지 법률구조의뢰서에 관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검토해보고, 상담사례집을 읽으며 주요 판례들을 공부해보며, 학교에서는 아직 수강하지 못한 가족법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을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과제로 법률구조의뢰서를 작성하고, 상담참관보고서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으며 적용해보고, 실제로 소장을 작성하며, 활용하였고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미흡했던 부분을 더 채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로서의 태도에 관해서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상담 참관, 사이버상담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며, 지식을 전달함에 있어서도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법적 쟁점을 찾아내어, 알맞은 언어로 전달하고,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 변호사가 갖추어야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상담 진행방식을 참관하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실무수습은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며 전공에서 배운 한국 가족들 특히 변호사의 도움을 경제적인 문제로 받지 못하는 약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하였는데, 바쁜 법학전문대학원 생활에서 잊혀가던 그 다짐을 기억해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귀중한 2주였습니다.

정 주 영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신을 차려보니 2주간의 실무수습이 끝났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잠시 머물렀을 뿐입니다만, 아무리 실제 사례를 겪어보더라도 강의실에서 배운 지식은 막연할 뿐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 스스로의 표현으로부터 그의 상황을 알게 되는 것은 익명화된 자료로부터 당사자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도 이미 선배님들의 실무수습 후기에서 여러 차례 접한 표현이지만, 정말로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공부가 명확한 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최대한 ‘정확한’ 답을 써내려는 것이라면, 이곳에서 엇본 실무는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 그 효과와 실현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탐험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실무수습에 참여한 다른 분들은 그 탐험에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동료들의 시각은 제가 보지 못한 곳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 조금이나마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선생님들의 경험과 지혜가 큰 도움이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의 상담 참관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법원에서 이루어져서 그런 것인지, 그곳을 찾은 분들은 당장 소송이 진행 중인 등, 상담소보다 더욱 급박한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청하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상담실 한 칸에 앉은 채 이제껏 거처온 세 학기 남짓의 법학전문대학원 커리큘럼을 통해 배운 내용을 열심히 되짚어 보았지만, 만약 제가 상담을 했다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매우 원론적인 것들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뿐이었습니다. 내담자분들께서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잘 마치고 법조인이 된 뒤에도 실무를 겪고 고민하고 찾아봐야만 습득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2주라는 시간은 저의 역량 그 자체를 극적으로 향상시키기에는 짧은 시간입니다. 심지어 법조인으로서의 제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도 저는 아직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료들과 함께 다양한 시각을 나누고 의견을 조율하며 과제를 해결해본 경험은, 앞으로 만날 동료들과도 서로 의지하며 어울리도록 먼저 노력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따뜻한 기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회에는 도움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변호사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가장 직접적으로, 또 폭넓게 제공할 수 있는 직업 중 하나라는 사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위를 바라볼 줄 아는 따뜻한 마음과 확실한 역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곳에서 보고 들으며 깨달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앞

으로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유 송 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는 사회의 최외곽에 위치한 사람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법률가로 성장하겠다는 다짐 아래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무수습을 하고 싶었는데, 이번 실무수습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어 정말 기뻐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웃의 편이 되어 그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정체성과 철학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률구조, 가족법 개정 운동,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등 법률 전문성에 기반한 다양한 인권옹호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소장, 가치분 신청서, 법률구조 의뢰서,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작성해 볼 기회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법리, 주요 판례, 법 문서 작성 기본사항 등을 배웠다면, 실무수습을 하면서는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하는지, 사실관계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장을 써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좋은 법률가가 되기 위하여 앞으로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깨닫게 된 계기였습니다.

실무수습 기간 여러 건의 면접상담에 참관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주로 이혼, 후견제도,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에 관한 상담이었습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질의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추출하고 검토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내담자가 나홀로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는 점이 기억에 깊이 남아있습

니다. 나홀로소송인에게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정리하는 일은 너무나 버겁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법을 배우고 있는 저에게도 그러하듯이 그들에게 법과 제도는 어렵고 민사소송은 복잡했습니다. 이는 법률복지의 중요성과 법률구조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실무수습생들을 따뜻하게 챙겨주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모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 희 영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전원에서 젠더법과 가족법 수업을 수강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업에서는 글로만 배우기 때문에 법조문과 판례가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배우고 싶어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실무수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주의 실무수습 기간 동안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읽기 및 최신판례 사례화 하기, 법률구조의뢰서작성, 법률상담 참관, 라오니모임(가정폭력피해자 자조 모임) 및 동지 교실 참관, 사이버상담 답변 작성, 소장 및 가처분신청서 그리고 파산면책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제를 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법률상담 참관입니다. 상담 참관을 하면서 직전 학기 수강한 가족법에서 이혼, 재산분할, 친권, 상속, 한정승인 등 조문과 판례로만 배운 것들이 실제 사례에 적용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 인권이 많이 신장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많음을 절실히 느꼈으며 별거 등으로 가정폭력이 현재진행형은 아니라도 피해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트라우마로 계속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선생님들께서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법률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동시에 내담자에게 공감과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여성과 가족 분

야에 관심이 많았고 가족법을 수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법과 같은 법리 적용은 어려워서 더 깊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한가지 질문을 하더라도 그 안에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하나씩 뜯어보며 구체적으로 법률 조언을 해야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담자는 상담에서 법적 조언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들을 털어놓고 위로받고 간다고 느꼈습니다. 한 내담자는 ‘지금까지 제 얘기를 어디에도 털어놓을 데가 없었고, 부모님께도 털어놓기 어려웠는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였고, 뒤에서 단지 참관만 하고 있던 저에게도 ‘들어줘서 고맙다’고 하였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를 들으면서 인생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고비에 몸과 마음이 힘든 상황에서 법률상담을 받으러 찾아오신 만큼,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경청하고 공감함으로써 의뢰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안정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로스쿨을 다니며 공부와 경쟁에 치이면서, 입학 당시 약자를 위한 법조인이 되겠다는 원대한 포부는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무수습은 법조인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실무수습 학생들을 챙겨주시고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하신 가정법률상담소의 모든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 수 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첫날이 어제 같은데 벌써 2주가 다 지나 이렇게 소감문을 작성하고 있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실무수습생으로 선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법 수업을 아직 수강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걱정이 앞서 급히 사설 학원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이혼, 입양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나 유류분 계산이

어렵게 느껴져 가족법은 저에게 맞지 않는다는 선입견이 생길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수험서에서 다루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쟁점을 아우르는 실제 가사 사건에 흥미를 키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종일 책을 보며 공부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담소나 법원에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내담자 분들을 직접 마주하고 그 상담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법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적 분쟁의 해결 방식을 쉽고 간명하게 설명하시는 상담위원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며, 향후 법조인이 되었을 때 만날 의뢰인, 증인 등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소외 계층에게는 법률이나 제도 자체의 생소함뿐만 아니라 분쟁 해결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 법이 더욱 멀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실감하여 법률구조의 필요성이 새삼 와 닿았습니다.

과제로 소장, 가처분 신청서를 비롯한 법 문서나 법률구조의뢰서 등을 직접 작성해 본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과제 수행을 위해 본 실제 사건 기록들은 판례나 사례집에서 보았던 사실관계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특히 이혼이나 양육비 청구에 관한 기록을 검토하면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 진술서를 몇 번이고 반복해 읽으며 안타까움과 분노를 삭인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법적 쟁점을 도출해 내며 내담자가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법리나 판례, 제도 등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이 실제로 누군가를 돕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알게 되어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학부생 때, 여전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가 빈번하고 피해자의 법적 구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충격을 받아, 이러한 여성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수호하는 데 일조하겠다는 마음으로 로스쿨 진학을 결심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학하고 나니 막대한 학업량과 경쟁에 치여, 오로지 다음 시험을 보기 위해, 좋은 성적을 받아 로스쿨에서 ‘살아남기’ 위해 공부한다는 느낌을 주로 받았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실무수습은 그와 같은 매너리즘에서 벗어

나 저의 꿈을 돌아보고, 약자의 손을 잡는 법조인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2주 동안 잊지 못할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모든 상담위원 선생님들, 변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7월 자원봉사자

•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박선화 님

• 야간상담을 해주신

김소이, 방선영,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님

• 다문화가정 영어상담을 해주신

김소이 변호사님

후원 고맙습니다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이현혜, 천정환 님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17-0003-1418-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02-780-5688 재무회계과



곽배희 소장, 법무부 방문하여 한동훈 장관과 면담

본소 곽배희 소장은 7월 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면담하여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법률구조 강화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 날 만남에는 법무부 권순정 기획조정실장과 이유선 인권구조과장 그리고 본소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과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이 배석하였다. (관련 사진 2면)

법학전문대학원생 하계 실무수습 진행

2023년도 하계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이 7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은 본소의 법률구조 과정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사례를 체험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법률지식을 현실에 접목,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익 및 인권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무수습은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이해, 상담사례집 「어떻게 할까요」이해, 법률구조 서류 검토, 법률구조의뢰서/파산·면책 신청서 등 법률구조 서류 작성, 사이버 상담 실습, 상담(본소 및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출장상담) 참관 및 보고서 작성, 변호사 업무 실습으로 소장 등 작성, 가정폭력피해자 자조모임과 가정폭력행위자 대상 교육강좌 참관(zoom) 및 기록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실무수습에는 총 5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현승중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정주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유송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신희영 / 신수인

(관련 사진 2면)

동국대학교 법률구조 현장 체험교육

본소에서는 지난 7월 18일 대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현장 체험교육이 진행되었다. 본 교육에는 동국대학교 강동욱 교수의 인솔로 법학과 학생들 22명이 방문하여 본소의 법률구조사 및 가족법개정사와 관련한 영상을 시청하고 상담소 역사 사진 전시실을 관람하였다. 그리고 조은경 상담위원이 본소의 가족법개정활동과 법률구조 사례에 대해 강의 하였고,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법률구조 사례와 본소의 가족법개정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관련 사진 2면)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지난 7월 27일 본소 교육프로그램으로 김병후 원장(정신과전문의, 본소 이사)의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가 zoom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강의를 ‘공감능력’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강사는 인간사회에는 언어적 교류도 있지만 마음의 교류도 있다고 하면서 진정한 마음의 교류를 위해서는 ‘공감능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사례 중심의 강의로 진행되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다음 강의는 8월 24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진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며, 순회상담의 경우도 상당 부분을 전화상담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으나, 방역지침의 변화에 따라 본소에서도 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

● 대학생 현장체험실습

7.3.-7.28 동국대학교 김경희, 김현정, 이윤하, 최다빈

7.3.-8.29 이화여자대학교 김다은, 김윤서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전규선,
천다라, 박효원, 고현희 상담위원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 서울남부지방법원 출장상담

김민선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7월 6일 3년 임기의 법무부 난민위원회 자문위원에 위촉되었다. 12일에는 기획재정부 예산심의설명회에 김현옥 재무회계과장과 참석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7월 6일과 13일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등 사건을 조정하였고, 17일에는 서울가정법원의 재판역량강화교육(상속 세무 강의)에 참석하였다.

2023년 7월 상담통계

총 건수 4,997

법률상담 (4,134)

면접	전화	인터넷	서신	지상
1,078	2,914	140	1	1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671	35	157

• 인터넷 정보 이용 85,312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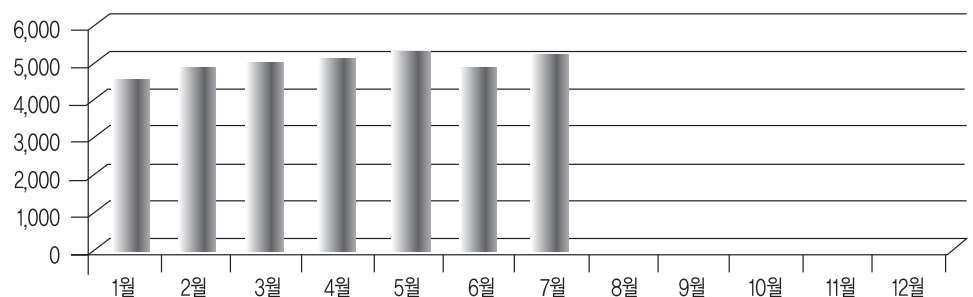
2023년 7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4,997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4,134건(82.7%), 화해조정 671건(13.4%), 소장 등 서류작성 35건(0.7%), 소송구조 157건(3.1%)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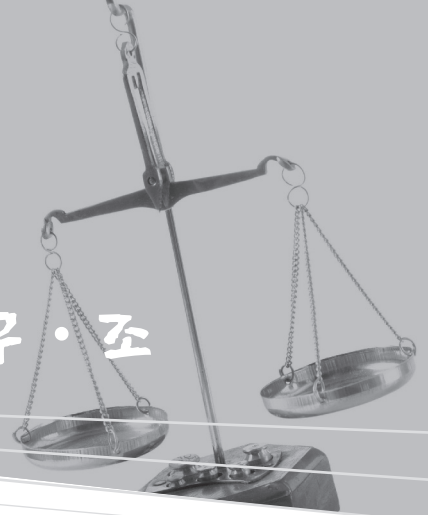
법률상담 4,134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3년 6월에 비해 부부갈등(5.5%→5.7%), 사실혼해소(0.9%→1.0%), 위자료·재산분할(6.7%→7.4%), 친생부인(0.7%→0.8%), 부양(1.5%→1.7%), 가족

관계등록부(2.4%→3.0%), 가사절차(8.0%→9.1%), 개명(0.8%→0.9%), 가사기타(13.6%→15.9%), 부동산(0.1%→0.3%), 민사기타(0.7%→0.9%), 형사절차(0.1%→0.2%)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4,134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078건(26.1%), 전화상담 2,914건(70.5%), 인터넷상담 140건(3.4%), 서신상담 1건(0.0%),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2023년
월별
총건수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입국하지 않은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

법률구조 2023-1-16

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70대)는 2006년 지인의 소개로 중국 심양에서 중국인 피고(여, 50대)와 약식으로 결혼식을 하였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 초청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피고는 입국하지 않았다. 원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수급자 상태인데 등록부상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어 수급자격 유지 및 임대주택 신청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이혼 소송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4. 2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하 생략)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에 대한 이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22-1-342

담당 : 유유희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30대)과 피청구인(남, 30대)은 2015년 협의이혼하면서 신청인이 자녀(여, 9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매월 7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피신청인은 양육비를 총 5백여만 원만 지급하고 연락을 두절하여 신청인은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4****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의 2013. 3. 11.자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지급의무의 이행으로 2022. 9. 22. 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12,000,000원을 분할하여 2023.6.부터 2024.5까지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지급하라. (이하 생략)

아내와 자녀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 온 남편과의 이혼

법률구조 2022-1-94

담당 : 김정수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청구의 소

내용 : 원고(여, 40대)는 피고(남, 40대)와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4명의 자녀가 있다. 피고는 결혼 초부터 원고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다. 자녀들이 태어나자 자녀들에게도 폭언과 폭력을 서슴지 않았다. 피고는 건강을 핑계로 주로 집에 있었고 원고가 일을 다녔는데 피고는 아이들을 수시로 구타하였고 큰아들을 팬티만 입혀 베란다로 내보내 밤늦게 까지 세워두는 등의 학대를 하였다. 큰아들은 피고의 폭력을 피해 가출하거나 남의 집 창고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 피고는 4자녀 중 특히 첫째와 둘째를 집중해서 구타하였으며 퍼즐 맞추기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아이들 뺨과 가슴 등을 마구 때리고 원고가 밥도 주지 못하게 한 일도 있다. 또한 피고는 스포츠도박에 빠져 수시로 원고에게 돈을 구해오라고 요구하였고 돈을 안 주면 때리고 집 밖으로 쫓아내곤 하였다. 생계를 위해 원고는 자활센터에 나가 일하였으나 피고는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옷을 벗겨 속옷 검사를 하고 구타까지 하여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의정부지방법원 5.2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생략)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3.5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25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6. 피고는 2023.7.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1회, 매월 둘째 일요일 12:00부터 18:00까지 (당일 면접)나. 방법: 피고가 사건본인들과 협의한 지하철역으로 데리러 가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 협의한 지하철역으로 데려다준다. 면접교섭은 피고의 주거지가 아닌 외부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사건본인들에게 원고의 전화번호나 주소지 등 신상을 묻지 않기로 한다.

**60여 년 동안 연락 없이 떨어져 지내다가
사망한 부친의 상속재산 포기**

법률구조 2023-1-63

담당 : 김민선 변호사

사건명 : 상속포기

내용 : 청구인(여, 60대)은 피상속인인 망 사건본인(남, 80대)의 자녀이다. 청구인의 부모는 청구인이 어린 시절 헤어졌고, 청구인은 모친과 함께 살며 60여 년 동안 부친인 사건본인과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다. 그러던 중 사건본인은 2022. 9.경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2023. 2.경 사건본인의 주소지 구청으로부터 상속안내문을 받았고, 이에 비로소 사건본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부친인 사건본인의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포기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전주지방법원 2023. 3. 7.)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사건본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2023. 2. 21.자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다단계사업 실패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2-1-362

담당 : 박은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0대)은 혼인 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였으나 회사 재정악화로 퇴사하였고, 석재 시공 사업을 운영하던 중 IMF 외환위기로 폐업하게 되었다. 1999년경 신청인은 1.5톤 소형트럭을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던 중 사망사고를 내게 되었고, 사고로 구치소에 수감 되었다. 얼마 후 배우자가 마련한 1,000만 원으로 피해자 가족과 합의 하고 출소하게 되었으나, 다액의 손해배상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고 구직도 어려워 노숙생활을 하게 되었다. 노숙생활을 하던 중 교회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일을 도와주면서 숙식을 해결하였는데, 교회 지인으로부터 다단계 투자 제의를 받고 대부업체에서 대출까지 받아 돈을 주었으나 사기를 당하였다. 신청인은 과거 교통사고 사건으로 손해배상금 지급 독촉에 압박을 받던 중 대부업체 채무까지 발생하게 되었고, 더 이상 적은 수입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3. 5. 22.)

채무자를 면책한다.

**코로나19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2-1-381

담당 : 조성원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30대)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편의점과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신청인의 친모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면서 병원비 마련을 위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다. 친모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고금리 대출로 인해 신청인의 생활은 매우 힘들어졌다. 다행히도 취업에 성공하면서 이율이 낮은 금융권 대출로 전환할 수 있었다. 친모는 건강을 회복하고 신청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손님이 끊기면서 극심한 운영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친모의 자금이 아닌 빌린 돈으로 시작한 것이었기에 필요한 운영자금은 상상을 초월했고, 결국 폐업과 동시에 신청인은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되었다. 신청인은 월급만으로 이자

를 마련하기 벅차 대출을 추가로 받아야만 하였다. 그러다 이른바 ‘채무돌려막기’를 해오던 중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직장을 잃게 된 이후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의 쌓인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공황장애와 불안장애,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 이처럼 건강 악화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신청인은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3. 5. 30.)

채무자를 면책한다.

**폭력으로 별거 중인 아내에게
문자로 협박과 폭언을 한 남편과의 이혼**

법률구조 2023-1-166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60대)는 피고(남, 70대)와 법률상 부부로 혼인 초부터 피고의 주사와 폭행, 폭언에 시달렸다. 피고는 술을 먹고 원고를 죽이겠다고 휘발유를 들이붓고 때려 원고가 응급실에 실려간 일도 있고, 재떨이나 선풍기 등 가재 도구들을 던치는 대로 원고에게 집어 던져 수차 상해를 입혔다. 전디다못해 원고는 2003년 경 집을 나왔으나 피고는 수차 가출신고를 하고 원고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협박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왔다. 원고는 페타이어 일을 하면서 폐 기능에 문제가 생기자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한편 수십 년간의 협박과 폭언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구조를 신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서울가정법원 2023. 6. 7.)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혼인기간 내내 아내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남편과의 이혼**

법률구조 2023-1-436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0대)는 피고(남, 60대)와 법률상 부부로 혼인 초부터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원고를 폭행했

다. 원고는 공부에 대한 미련이 있어 야학에 다니고 싶어 했는데 피고는 원고가 야학에 가겠다고 하면 폭행을 하면서 심하게 반대하였고, 그래도 원고가 계속 야학에 다니겠다고 하자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일도 있다. 2021년 6월경 피고의 귀가가 늦어져 원고가 잠이 들었는데, 피고는 창문으로 들어와 원고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머리와 뺨을 때리고 망치로 상해를 입혀 경찰에 신고되었다. 경찰의 도움으로 원고는 보호시설에 입소하였고 이후 별거하면서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3. 7. 1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위탁아동의 성과 본을
위탁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허가**

법률구조 2022-1-249

담당 : 김경수 변호사

사건명 : 자의 성과 본 변경허가

내용 : 청구인 겸 사건본인(7세)은 친부를 알 수 없어 친모가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친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었다. 청구인의 친모는 청구인 출산 후 신생아 매대 브로커를 통해 불법 입양을 시도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청구인과 분리된 후 연락이 두절 되었다. 청구인은 생후 보름도 채 안되어 영아원에 입소하였고 2019. 5. 경 남**가 가정위탁 보호결정을 받아 양육하게 되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소송구조를 통해 2021. 9. 경 청구인의 친모에 대한 친권 상실선고가 되었고, 남**가 청구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2022. 3. 남**의 딸인 임**로 미성년후견인이 변경됨에 따라 청구인의 위탁모는 임**가 되었다. 그런데 임**의 친자인 진**과 청구인의 성이 달라 청구인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것이 염려되어 초등학교 입학 전 임**의 배우자인 진씨로 성과 본을 변경하기 위해 소송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수원가정법원 2023. 7. 24.)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성을 “진(陳)”으로, 본을 “여양(驪陽)”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2023년 8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 (8월은 휴강, 9월 11일, 9월 25일)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023년 2월~11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5시 (※ 12월은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사전예약 접수만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강의방법 : zoom을 통한 비대면 강의 / 대면강의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정	강 의 제 목
8월 24일	폭력적인 배우자에 대항하는 법
9월 21일	의심, 피해망상, 그리고 조현병
10월 26일	마음이란 무엇인가?
11월 23일	부부대화법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 캠프」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23년 8월 17일 ~ 19일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휴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등지고실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3시~5시
- ▶ 대상 : 서울가정법원 등 보호처분 대상자
- ▶ 진행 : 이서원 소장(한국분노관리연구소), 황순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일정 및 강의제목

일정	강 의 제 목	강사
8월 9일	시간이 흘러도 잊어지지 않는 고통, 트라우마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9월 13일	삶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기분장애	
10월 11일	존재를 삼킨 타인의 시선, 불안장애	
11월 8일	모든 걸 끝짓내겠다는 충동, 불안조절장애	
12월 13일	갈망에서 시작된 절망, 중독장애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가정폭력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교사들을 위한 법 교육 - 교원직무연수

가족법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 ▶ 연수과정명 : 법과 생활
- ▶ 과정구분 : 전문성향상 과정
- ▶ 연수기간 : 2024년 1월 16일(화)~18일(목), 1일 5시간, 3일간
- ▶ 이수시간 : 15시간(1학점, 성적산출 안함)
- ▶ 연수대상 : 서울·전국 초·중·고 교원 20명(선착순 모집)
- ▶ 연수운영 방법 구분 :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
- ▶ 연수경비(1인당 자비 부담액) : 무료
- ▶ 교과과정
 - 가족법 : 가족법 변천사 및 법률구조사/혼인 관련 법률/이혼관련 법률/부모·자녀 관련 법률/후견 관련 법률/상속·유언·유류분 관련 법률
 -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률
 - 아동복지법 관련 법률
 - 가정폭력 관련 법률
 - 폭력예방교육의 이론과 실제
 - 주택 임대차 관련 생활법률
 -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관련 법률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1644-7077 F: 02-780-0485 홈페이지: www.lawhome.or.kr E-mail: edu@lawhome.or.kr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일시 ▶

2023년 8월 17일~19일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민임대 등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놀이치료」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 후원 : SAMSUNG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상상담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화상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
전화상담 및 문의 1644-7077

다문화가정을 위한 야간 영어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사전 예약 필수)
사전예약 및 문의 1644-7077

www.lawhome.or.kr